

지속 가능한  
공급망 관리 지침

##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지침

### 제1조 목적

이 지침은 주식회사 유한화학에서 신뢰와 소통, 변화와 혁신, 공동운명체라는 동반성장 사상을 근간으로 상생협력 활동과 공정거래 자율 준수를 통하여 협력사(이하 “공급사/도급사/자회사등 포함”)와 지속 성장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. 또한,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협력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아가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.

### 제2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

전자 구매 입찰시스템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및 거래를 진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.

### 제3조 ESG 구매 확대

#### ① 친환경 구매 확대

유한화학은 환경 준수를 지향하는 물품 구매를 확대하고 지속한다.

\*팜유 또는 팜 기반 제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, 사용하게 되는 경우 ESG 경영을 준수하는 협력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.

#### ② 분쟁광물 관리 강화 - 분쟁 광물

(Conflict Minerals :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금의 네 가지 광물)

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 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을 비롯한 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, 위험대응절차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협력사들이 분쟁광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. 특히 이를 준수하는 업체를 우선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유한화학은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,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한다.

### ③ 공급업체 다양성 촉진

협력사를 선정할 때 유한화학의 윤리 정책 등을 준수하고 인권을 준수 하는 기업 (사회적친화기업), 약소 중소기업, 소수자 및 여성 기업가 기업 등을 우대하며 다양하고 포괄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전념한다.

### ④ 노동 관행 및 인권 보호

유한화학에 공급 되는 모든 품목의 협력사에서 아동 또는 강제노동, 노예제 또는 인신 매매의 사용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책을 위반하고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업무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. 또한, 협력사에서는 직원을 위협하거나 신체적 처벌을 가하여서는 안되고 신체적, 성적, 심리적 또는 언어를 포함한 그 밖의 형태로 직원을 모욕하거나 괴롭힘을 가하여서는 아니되며, 고용 수수료 납부, 여권, 임금 또는 개인 재산 원천징수, 강제 야근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.

## 제4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

유한화학의 협력사는 생산 원료,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한화학은 원재료 조달, 제품 생산, 품질 관리, 공정 개선 등 제조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진행 하도록 한다.

### ① 기술 협력

주기적인 협력사 실사 방문을 통해 원료나 제품의 품질이 균일하게 관리되도록 지원한다.

② 교육 및 컨설팅 지원

협력사 요구 시 동반성장, 소통,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상생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.

유한화학 협력사와 관련 있는 조직의 경우 주기적으로 ESG 교육(현장교육, 이커닝 교육등) 을 이수한다.

③ 지속적인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

협력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요 협력사와 연 1~2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,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 하도록 한다.(유한화학 홈페이지에 협력사들의 고충처리 접수 가능)

## 제 5조 지속 가능한 협력사 관리 절차

① 비즈니스 전(前) 단계

유한화학은 협력사 선정 시 '유한화학 협력사 행동규범'(Code of Conduct)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서약을 체결한다.

② 비즈니스 단계

유한화학은 거래 중인 협력사 중 거래 규모, 잠재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각 팀의 담당자가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ESG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사항 확인 및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.

법/제도 위반이 있거나 글로벌 평가 기관과 이니셔티브에서 정한 고 위험협력사로 판정되면 유한화학과의 비즈니스가 제한 될 수 있다.

협력사 관리 절차는 아래에 따른다.

- 평가 대상 협력사 선정 → 평가 안내 → 자가 점검 → 고 위험 협력사 식별

→ 현장 점검(필요시) → 개선 과제 도출 및 개선 시행 → 결과 확인 →  
추가 개선 시행 (필요시)

- 평가 대상 협력사 선정 :

각 팀의 비즈니스 중요도 및 연속성에 따라 선정된 협력사

- 평가 안내 :

선정된 협력사에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평가 안내

- 자가 점검 :

평가 안내를 받은 협력사는 유한화학에서 제공받은 평가 설문지에 따라 자가 점검을 실시 후 유한화학에 회신

- 고 위험 협력사 식별 :

협력사 자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규 위반 여부, 글로벌 평가기관 및 이니셔티브의 요구 수준 참고하여 구분

-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 실행 :

유한화학의 검토 결과 부적합하거나 미비한 사항의 경우 개선 계획(조치 요구 기한 포함) 을 요구함

- 결과 확인 :

유한화학의 조치 요구 기한 도래 시 개선 사항 점검(필요시 현장 점검) 후 결과를 공유

## 부 칙

1. (제정) 본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지침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(개정) 본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지침은 2023년 09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